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2.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이·미용인의 양성과 발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예산지원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지도·감독 및 홍보, 포상 등 규정 (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위생과
- 라. 입법예고 : 2026. 1. 27.(화) ~ 2026. 2. 1.(월)(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은 지역 소상공인 밀착형 산업으로, 관내에는 이용업 104개소, 미용업(헤어·피부·네일·화장 등) 2,442개소 등 약 2,546개소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골목상권과 지역 자영업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업의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자료**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 : 60곳 조례 제정

[표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제정 현황 (경기도 1곳, 시군 24곳)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2025. 1. 1.
2	오산시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3. 3. 31.
3	고양시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1. 10.
4	과천시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2. 18.
5	광명시	광명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12. 29.
6	광주시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9. 24.
7	구리시	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6. 23.
8	군포시	군포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7. 11.
9	부천시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4. 9.
10	성남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4. 30.
11	수원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7. 12.
12	안산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2. 9.
13	안성시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7.
14	안양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8. 3. 29.
15	양주시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4. 29.
16	양평군	양평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1. 12. 27.
17	여주시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9. 28.
18	연천군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4. 12. 19.
19	의왕시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30.
20	의정부시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0. 14.
21	이천시	이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5.
22	파주시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7.
23	평택시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 3. 2.
24	하남시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7. 8.
25	화성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3. 14.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근거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미용 산업 지원 예산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2026년 이·미용업소 대상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예산	지원내용
사무 관리비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물품 지원	6,000	- 이·미용업소 물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집합위생 교육비 지원	7,000	- 집합위생교육 개최 및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대한미용사회 보조금 지원)

※ 기제정된 「남양주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29. 제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

- 그 밖에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위생과장 김수현